

변경대비표(ETF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설정/환매	투자 대상자산	취득 한도	결산	변경 사항
1	미래에셋 TIGER 국채 3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○	주 1), 주 2)	주 1)	-	5), 6)
2	미래에셋 TIGER 글로벌메타버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2)	-	○	6), 7)
3	미래에셋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주 2)	-	○	7)
4	미래에셋 TIGER 한중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	-	주 2)	주 2)	-	7)
5	미래에셋 TIGER 글로벌리튬&2 차전자 SOLACTIVE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	-	-	주 2)	○	7)
6	미래에셋 TIGER 단기선진국하이일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(합성 H)	-	-	주 2)	-	-
7	미래에셋 TIGER 일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	-	-	주 2)	-	-
8	미래에셋 TIGER 차이나과장판 STAR5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	-	-	주 2)	○	7)
9	미래에셋 TIGER 한중전기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	-	-	주 2)	-	-
10	미래에셋 TIGER23-12 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-	-	-	○	7)
11	미래에셋 TIGER24-10 회사채(A+ 이상)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-	-	-	○	7)
12	미래에셋 TIGERFn 메타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6), 7)
13	미래에셋 TIGERFn 반도체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6), 7)
14	미래에셋 TIGER 글로벌 BBIG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○	6), 7)
15	미래에셋 TIGER 글로벌자율주행&전기차 SOLACTIVE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-	-	○	6), 7)
16	미래에셋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 SOLACTIVE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-	-	-	○	7)
17	미래에셋 TIGER 미국 S&P500TotalReturn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-	-	-	○	7)
18	미래에셋 TIGER 미국 S&P500 배당귀족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7)
19	미래에셋 TIGER 미국 S&P5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	-	-	-	○	6), 7)
20	미래에셋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	-	-	-	○	7)
21	미래에셋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혼합-파생형)(합성)	-	-	-	○	7)

2. 변경 사항:

- 1) 설정/환매 관련 변경
- 2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3)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 변경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6) 법 개정사항 반영
- 7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4월 14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설정/환매 관련 변경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3 조 (설정단위)	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<u>30,000 좌</u> 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<u>1,000좌</u> 로 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 부.4. 모집의 내용 및 절차	모집방법 및 절차: 설정단위인 <u>30,000 좌</u>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	모집방법 및 절차: 설정단위인 <u>1,000좌</u>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
제 2 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<p>가. 매입 [설정을 통한 매입] <u>-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.</u> -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<u>30,000 좌</u> 단위로 받습니다.</p> <p>(1) 설정단위 (Creation Unit) (생략) ▶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<u>30,000 좌</u> 입니다. 따라서 수익자는 <u>30,000 좌</u> 또는 그 정배수 (<u>60,000 좌, 90,000 좌</u>)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나. 환매 [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] <u>-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해지를 합니다.</u> -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<u>30,000 좌</u> 단위로 받습니다.</p>	<p>가. 매입 [설정을 통한 매입] <u>-현금으로 설정합니다.</u> -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<u>1,000 좌</u> 단위로 받습니다.</p> <p>(1) 설정단위 (Creation Unit) (생략) ▶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<u>1,000 좌</u> 입니다. 따라서 수익자는 <u>1,000 좌</u> 또는 그 정배수 (<u>2,000 좌, 3,000 좌</u>)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나. 환매 [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] <u>-현금으로 해지를 합니다.</u> -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<u>1,000좌</u> 단위로 받습니다.</p>

2)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 14 조(투자 대상자산 등)	<신설>	-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중 채권 관련 상장지수증권 (이하 '채권 관련 상장지수증권(Exchange Traded Note)'라 한다')
제 15 조 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	<p>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<u>2.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한다.</u>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<u>2. 채권 관련 상장지수증권에의 투자는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<u>2 의 2.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<신설>	<p><u>[채권 관련 상장지수증권]</u></p> <p><u>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중 채권 관련 상장지수증권 (이하 '채권 관련 상장지수증권(Exchange Traded Note)'라 한다')</u></p> <p><u>(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)</u></p>

주2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 15 조(투자 대상자산 등)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<신설>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p>
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<신설></p> <p>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p> <p>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</p> <p>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환매조건부매수</p> <p><생략></p> <p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p>
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</p> <p>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</p> <p><생략></p> <p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p>

3)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
주1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	<p>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1 의 2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	<p>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1 의 2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1. 채권 (80% 이상) 2. 집합투자증권등 (20% 이하)	1. 채권 (60% 이상) 2. 집합투자증권등 (40% 이하)

주2)

- 미래에셋TIGER글로벌리튬&2차전지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- 미래에셋TIGER차이나과창판STAR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6 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	1. 주식관련 파생상품,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 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 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</u>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한다.	1. 주식관련 파생상품,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 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 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파생상품] 투자대상 세부설명 <생략> 다만,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</u>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 다.	[파생상품] 투자대상 세부설명 <생략> 다만,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

- 미래에셋TIGER한중반도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- 미래에셋TIGER한중전기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)
- 미래에셋TIGER일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합성 H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6 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	1. 주식관련 파생상품,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 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 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</u>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초과로 한다.	1. 주식관련 파생상품,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 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 주식관련 파생상품 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초과로 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파생상품] 투자대상 세부설명 <생략> 다만,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</u> 이 투	[파생상품] 투자대상 세부설명 <생략> 다만,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

	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	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미래에셋TIGER단기선진국하이일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-파생형)(합성 H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6 조(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)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하이일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	1.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하이일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파생상품] 투자대상 세부설명 <생략> 다만, 하이일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할 것 (<u>위험평가액이</u>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초과)	[파생상품] 투자대상 세부설명 <생략> 다만, 하이일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를 초과할 것 (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초과)

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<투자 비용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6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 지시 등)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 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 업자 및 신탁업 자의 변경)	① <u>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~③ <생략> ④ <u>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</u>

		<p><u>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--	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<p>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</p>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</p>

7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<p>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</p> <p>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</p> <p>- <u>신탁업자 : 국민은행</u></p>	<p>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</p> <p><삭제></p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